

“기회는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”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제공일 : 2011. 9. 8.
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

과 장 : 박 범 수

사무관 : 이 병 웅

전 화 : 500-2381

쪽 수 : 1P

별첨자료 : 없음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11년 9월 9일 주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추진

-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 건축 허용 검토 -

〈 주 요 내 용 〉

◇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중 종전 농어가 주택 건축은 허용하고 있으나,

-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조성 차원에서 하반기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.

* (현행)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건축허용 → (개정안) 단독주택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규제 중 해당 지역 주민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단독주택 건축행위를 제한 하던 규제(현재는 농어가주택만 허용)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.

- 금년 하반기 중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,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그리고, 2012년 중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